

검토의견서

【사회적경제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1. 제안이유

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내용 중 “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”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,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현 제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 및 특혜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위원의 연임제한과 제척·기피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.

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4조 제3호 “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”과 제10조“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”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현 제도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조 및 호를 삭제
- 나. 안 제5조의 4항은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”는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, 5항은 “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·기피 하여야 한다”는 내용을 신설하여,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 및 특혜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개정
- 다. 안 제14조 3항, 4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로 “보고 및 검사 등”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

3. 검토의견

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,제5조제10조제14조